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II

(입소비용)

1.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아래표 참조) 단, 동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 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감경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입소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첨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

요양 등급	기준일	급여항목		
		급여총액 (원)	공단부담금(80%/원)	본인부담금(20%/원)
1등급 (1일 86,030원)	30일	2,580,900	2,064,720	516,180
	31일	2,666,930	2,133,550	533,380
2등급 (1일 79,810원)	30일	2,394,300	1,915,440	478,860
	31일	2,474,110	1,979,290	494,820
3등급 (1일 75,360원)	30일	2,260,800	1,808,640	452,160
	31일	2,336,160	1,868,930	467,230

※ 4등급~5등급(치매등급)은 3등급 수가 준용

3.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III

[첨부 2]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역(1일)	비고
비 급 여 현 황	식재료비	3,000원(1식)	3,000원 * 3식 = 9,000원	한달식대비=9,000원*(해당 월)일수
	간식비	250원(1식)	250원 * 2식 = 500원	한달간식비=500*(해당 월)일수
	상급침실	15,000원(1인실)	15,000원	한달이용료=15,000원*(해당 월)일수
		10,000원(2인실)	10,000원	한달이용료=10,000원*(해당 월)일수
	이미용비	무료		

(계약해지)

1. 요양원은 입소자가 다음 각항의1에 해당할 경우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 사항 기재 등 부정수단으로 입소할 경우
- ② 시설이용계약서 규정에 의해 이용자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③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과 타 입소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요양원에서 인정 할 때
- ④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IV

- ⑤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과 타 입소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⑦ 보호자 및 입소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⑧ 10박을 초과하는 장기입원 및 외박이 있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퇴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2. 입소자와 입소보호자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요양원에 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입소보호자가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단퇴소 할 경우 이 계약은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본다.

4. 입소자와 입소보호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이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때에는 예고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퇴소를 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V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입소 보호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입소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 ② 입소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즉시 시신을 인수하여야 하며 시신 인수가 지체될 시 본 요양원에서 임의로 사망자를 영안실로 모실 수 있다.
- ③ 신원 인수인이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 장례를 화장으로 시행하며, 그 비용은 추후 신원인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⑤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⑥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⑦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시설과 협의하여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설과 협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